

한-바레인 '특허심사 고속도로' 개통으로 특허획득 빨라진다

- 한·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(PPH) 시범 실시 시작(1.15) -
- 바레인 진출 우리 기업 시장 선점, 핵심기술 보호 효과 기대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1. 15.(수)부터 3년간 한-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(PPH)*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. 이번 프로그램은 바레인(산업통상부)의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,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.

* PPH(Patent Prosecution Highway):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,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

현재 바레인의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36~48개월로 알려져 있다. 반면, 한국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*은 '20.1개월('23년)로 상대적으로 짧다.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하여 바레인에서의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특허획득 기간: 심사청구부터 심사종결처리까지의 기간

** <참고> (멕시코 PPH 사례) 우리기업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이 48개월에서 4.9개월로 단축

바레인은 금융 및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, 걸프협력회의(GCC*) 국가 간 물류와 사업(비즈니스)의 연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. 한국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에너지, 석유화학, 인프라 등 주요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.

* GCC(Gulf Cooperation Council): 사우디아라비아, 쿠웨이트, 아랍에미리트(UAE), 카타르, 오만, 바레인으로 구성된 협력기구.

이번 한-바레인 PPH 체결로 한국과 PPH를 시행하는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되었다.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바레인에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,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이번 한-바레인 간 PPH 시행은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개발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붙임: 특허심사 하이웨이(PPH) 개요

담당 부서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	책임자	과 장	신준호 (042-481-8321)
		담당자	사무관	이다나 (042-481-5400)

1 출원 형태별 종류 및 개념

- (PPH)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, 다른 특허청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
- (PPH Mottainai) PPH의 한 종류이며, 출원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심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PPH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
- (PCT-PPH) PCT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지정국에 진입할 경우, 해당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



2 대상 특허청별 종류 및 개념

- (양자간 PPH) 두 개 특허청간에 PPH/PCT-PPH 제도가 시행되는 양자간 프로그램
 - * 양자간 PPH 프로그램이 시행 중에 다자간 PPH인 IP5·Global PPH가 시행된 경우, 다자간 PPH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
- (IP5 PPH) IP5 간에 PPH-Mottainai/PCT-PPH가 시행되는 다자간 프로그램 (‘14.1.6. 시행)
- (Global PPH) 27개 특허청*간에 PPH-Mottainai/PCT-PPH 제도가 시행되는 다자간 프로그램

- 양자간·IP5·Global PPH 프로그램을 통해 39개 특허청(시행국은 35개, 국제기구 4개)*과 PPH (PCT-PPH 포함) 시행 중('25.1.기준)

* 일본('07.4), 미국('08.1), 덴마크('09.3), 영국('09.10), 캐나다('09.10), 러시아('09.11), 핀란드('10.1), 독일('10.7), 스페인('11.7), 중국('12.3), 멕시코('12.7), 싱가포르·헝가리('13.1), 오스트리아('13.3), EPO·호주·이스라엘·스웨덴·노르웨이·포르투갈·아이슬란드·노르딕특허기구('14.1), 필리핀('15.5), 대만('15.7), 에스토니아('15.7), 콜롬비아('16.2), 폴란드('17.1), 뉴질랜드('17.1), 비셰그라드특허기구('18.1), 페루('19.1), 유라시아('19.1), 베트남('19.6), 사우디('19.7), 브라질('20.4), 칠레('20.7) 말레이시아('20.12), 프랑스('22.9), 인도네시아('23.12), 바레인('25.1)

